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7
----------	-----

2024. 6. 11.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31. / 김지훈(민) 의원 등 10명
- 나. 회부일자 : 2024. 5.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6. 11.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복지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기준과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신설하여 남양주시 장학사업의 내실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유 재원 활용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량권 부여(안 제5조제3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련 자치법규 제명 정비(안 제5조제5항)
- 장학생 자격 문구 정비(안 제7조제1항)
- 복지장학금 대상 확대 및 자격 요건 조정(안 제7조제3항)
  - 복지장학금 대상 확대: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 추가

- 최소 평점 조정

\* 1.6점 → 2.0점(4.5점 만점), 1.4점 → 1.7점(4.3점 만점), 1.1점 → 1.5점(4.0점 만점)

○ 대학생의 지원횟수 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최대 8회 이내(재입학, 편입 등 포함)

○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 재정립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15조)

○ 기금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5년 연장)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복지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범정부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 기조에 맞는 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 하였으며, 1.6점으로 지나치게 낮았던 복지장학금 최소 평점을 4.5학점 만점 기준 2.0점으로 조정하고, 대학생 최대 지원 횟수를 8회까지 제한하는 등 장학금 지원 및 수혜 기준을 강화하여 장학사업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 운용에 대한 임의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는 강제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부칙으로 정하여진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매년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N수생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